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6-79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 약칭 및 인용 조항 정비(안 제8조 및 제15조)
- 다.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 등(안 제18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 : 2026. 7. 16.~2026. 8. 5. (제출된 의견 없음)
 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 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관 계 법 령	「문화예술진흥법」
법무팀 검토의견	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의 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
참고사항	-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과 같다”를 “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전단 중 “이하”를 “이하 이 장에서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다음”을 “제2항”으로, “이하”를 “이하 이 장에서”로 한다.

제18조 본문 중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축제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,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안의 시행에 재원조달이 일어나지 않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이현규
연 락 처	02-3153-8357